

1. 개정이유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의 서류에 반입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나.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의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구의 범위를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로 규정.

다.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45조)

태양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을 줄이기 위해 중간 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 면적 전체를 최종 복구준공 완료할 때까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12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생산·이용계획”을 각각 “생산·이용계획(토석 반입 계획 포함)”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호 중 “조치”를 “조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말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중간복구를 실시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부지를 포함한 전체 허가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중 “측량업자등가”를 “측량업자등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

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제2호, 제45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3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m ³	m ³	m ³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m ²		본		m ³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토석 반입계획 포함)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중·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계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청인 →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담당부서	

토석채취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가를	성명	생년월일	
받은 자	주소		
산지 소재지			

허가내용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m ²	부대시설				완충구역 m ²
			계 m ²	산물처리장 m ²	진입로 m ²	관리사무소 m ²	
	채취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m ³	가채매장량 m ³	반입량 m ³	
채취기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허가·연장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허가조건

-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를 시·도지사등이 매년 발급하는 복구비에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 토석을 채취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도지사등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시·도지사등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 허가장소 입구에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cm, 세로 60cm, 높이 9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

- 허가번호:
- 소재지:
- 허가내용(허가면적, 채취용도,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채취기간 등)
- 허가를 받은 자: (연락처:)
- 허가자:

10. 토석의 반입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석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11.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채석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m²	m²	m²	m²	m²	m²	m²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m³	m³	m³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m²				본		m³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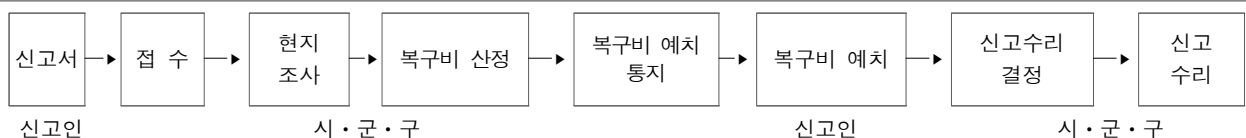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토석 반입계획 포함)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채석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m ²	부대시설					완충구역 m ²
		계 m ²	산물처리장 m ²	진입로 m ²	관리사무소 m ²	그 밖의 시설 m ²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m ³	가채매장량 m ³	반입량 m ³		
입목벌채	벌채 구역면적 m ²	수종	본수		재적 m ³		
			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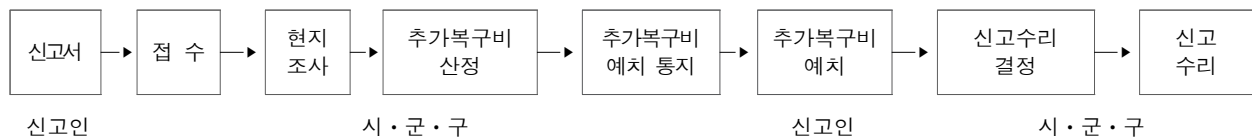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토석 반입계획 포함)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채석기간연장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성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m²	m²	m²	m²	m²	m²	m²
채석 및 반출기간			신고 연월일 및 번호				
채 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 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m³	m³	m³		
변경사항	신고기간	연장기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 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15조의2제2항</u>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u>법 제15조의2제4항</u>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법 제15조의2제2항제12호</u> 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⑥ <u>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u>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u>제2항</u> 에 따 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 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⑧ ----- ----- <u>제4항</u> ----- ----- ----- -----.

니하다.

1. ~ 4. (생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3. ~ 12. (생략)

② (생략)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

1. -----

----- 생산·이용
계획(토석 반입 계획 포함) --

3.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
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 6. (생략)

④ ~ ⑨ (생략)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
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
구 조치 <단서 신설>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
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
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

-----.

1. ----- 생산·
이용계획(토석 반입 계획 포
함)-----
--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

-- 조치. 다만, 법 제41조의2
에 따라 중간복구를 하는 경
우에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말한다.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

----. -----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 있으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중간복구를 실시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부지를 포함한 전체 허가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